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개정법률안 (조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891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4.

발 의 자:조정훈·김용태·김대식

김민전 • 서지영 • 김상훈

정성국 • 인요한 • 최수진

박준태 · 신동욱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 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(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)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음.

상기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4 조에 따라 국가, 시·도교육청 및 일반 지자체가 나누어 부담해 왔음. 그러나 동 특례규정의 시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임.

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된 2019년 이후 교부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시·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.

다만, 연차적인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경비 부담을 3년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국가의 분담비율을 감축하여 안정적인고교 무상교육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중 "1,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"을 "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2025학년도: 1,0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
- 2. 2026학년도: 1,0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
- 3. 2027학년도: 1,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4조(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	제14조(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		
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) ① 국가	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) ①		
는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10조			
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			
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<u>1,000분</u>	<u>다음 각</u>		
<u>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</u> 을 제3	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		
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			
하여야 한다.			
<u><신 설></u>	1. 2025학년도: 1,000분의 150에		
	해당하는 금액		
	<u>2. 2026학년도: 1,000분의 100에</u>		
	해당하는 금액		
	3. 2027학년도: 1,000분의 50에		
	해당하는 금액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